

 korea_customs

 koreacustoms

 koreacustoms



설치 및 운영

본청과 5개 본부세관(인천,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)에
납세자보호(담당)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
설치 운영

문의 | 관할 본부세관 세관운영과

구분	문의처	전자우편
관세청	042) 481-7757, 3298	headadv@korea.kr
서울세관	02) 510-1062~4	seouladv@korea.kr
인천세관	032) 722-5881~2	incheonadv@korea.kr
부산세관	051) 620-6052, 6054	busanadv@korea.kr
대구세관	053) 230-5110, 5117	daeguadv@korea.kr
광주세관	062) 975-8031, 8034	gwangjuadv@korea.kr



관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

관세청 홈페이지 www.customs.go.kr/kcs

관세행정에 대한 고충



납세자 보호관 을 통해

해결 하세요

| 2020.7.1.시행 |





납세자보호관 제도는?

위법·부당한 처분*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

*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 (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)

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운영



이렇게 달라져요

관세조사절차	기존	변경
조사착수		
↓		
조사진행	납세자 보호장치 없음	납세자 보호관이 보호!
↓		
조사종결		
↓		
과세전통지	적부심	적부심
↓		
과세처분	이의신청 조세심판	이의신청 조세심판

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* 까지 처리

*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도 신청 가능



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?

☞ 관세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대상

-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
-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는 재조사
- 납세자가 관세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
- 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
 - 조사대상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
 - 임의로 조사 기간연장·범위확대하는 행위
 -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열람·복사·보관하는 행위
 - 납세자에게 금품·향응·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
 -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,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행위
 - 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

☞ 일반 관세행정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대상

- 고지취소·환급·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
- 사전예고(독촉) 없이 압류하거나 고지처분하는 행위
-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
- 납세자에게 금품·향응·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
-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,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-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 없는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
-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
-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
-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

☞ 고충민원 신청 대상

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,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(소송 진행 중인 사항 등 제외)



권리구제 내용은?

- 위법·부당한 처분(납세고지 제외) 시정
- 위법·부당한 관세조사 시정
- 관세조사 중 관세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 시정
-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- 납세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



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☞ 신청방법

‘고충민원 신청서’ 또는 ‘권리보호(심의)요청서’를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

☞ 처리기한 (필요시 연장가능)

- 권리보호요청
 - 관세조사관련: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
 - 일반행정관련: 72시간 이내
- 고충민원: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

☞ 처리절차

